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3964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재가소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자 2024재나50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3964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가소1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575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4. 9.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5752 판결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가소11 판결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4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10,748원을 소장 부분 청구일로부터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N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 12행의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371) 소송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371)에서 2023. 7.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대법원 2023다263490)에서 2023. 11. 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판사 노호성

- 1) 원고의 재심소장 및 항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기재한다.